

복지적 접근을 통한 노인주거 변화 고찰

A Study on Welfare Approaches on the Change about Housing for the Elderly

류현주*

Hyunjoo Ryu

양세화**

Sehwa Yang

Abstract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how housing paradigm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from traditional societies to the current times in terms of welfare. Those changes could be necessary for establishing housing policies and implementing them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ir predictable problems related to welfare. It is intended that diverse housing issues for the elderly in relation to welfare are investigated. The welfare approach is appropriate for the consideration of elderly housing as one of the individual goals for the welfare.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purpose, the changes are considered in terms of social, physical, and policy aspects.

Keywords : elderly housing, welfare approach, changes of housing paradigm

I. 서 론

노인을 위한 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세대간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활동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기본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인간다운 생존권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다(최순남, 2000).

노인은 경제적·심리사회적·윤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주거문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복지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적 연구는 복지 범위와 대상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근대 시기에 국한되어 살펴 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홍형옥, 지은영,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의 변화를 복지적 관점에서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전환되면서 변화되어 왔는지를 사회적·물리적·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인주거의 변화를 복지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주거문제의 예방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과 관리, 정책에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논문과 학회지, 문헌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주거의 변화를 사회적·물리적·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희원, 울산대 대학원 박사과정

**정희원, 울산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Ph. D

II. 연구의 개념 틀 - 복지적 접근

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다(김경희, 1990).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은 그의 복지국가 이론에서 주택이 복지국가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특별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Hoestra,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인복지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특히 노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희, 1990).

노인주거연구의 접근방법에서 복지적 접근방법은 주택의 생산, 소비과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있고, 주택을 하나의 시설 건축물이라는 관점에서 설계적 접근을 하는 이론바 물리적 측면의 접근, 주택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다루려는 접근방법으로 나누고 있다. 주택은 시장에 의해 분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이며 주거주택은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생겨난다는 측면과 노인은 경제적·심리사회적·윤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주거문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복지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인에게 있어 주택의 결여 또는 주거상태의 열악함을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물질적 복지의 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저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택의 공급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는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한부분이 될 수 있다. 노인주거정책은 행정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바, 허약한 노인을 위한 정책일수록 시장논리보다는 복지적 접근의 대안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홍형옥, 지은영, 2002).

III. 전통주거에서의 노인주거의 변화

1.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조선전기에는 조선이 유교정치이념을 가지고 개국한 국가이지만 이 유교질서 이념이 일반적으로 또한 주택공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시기는 고려시대의 고전적 규범이 잔존하여 조선 초기에 성리학적 사회윤리인 성리학이 조선사회의 지배이념으로 자리를 잡고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쳐 보급되어갔으나 고려시대 이후 수백 년의 사회적 관습과 불교와 융합된 사회구조아래 굳어져 온 사회의례를 갑자기 바꾸기는 매우 어려웠으며, 따라서 사회제도의 변화 또한 점진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중기이후에는 유교적 사회 이념이 더욱 강화되면서 유교적 질서에 의한 영향이 사회적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유교의 토착화로 전통적 조상숭배와 가계계승의식의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가족구성의 가부장제 실시로 인한 유교적 생활적 실천이 공간과 생활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되었다(김동욱, 1997).

전통사회에서 유교가 인간의 노화과정을 신체적 노화와 인격, 성품 등 지적 노화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유교에서 생각하는 노인관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기를 보면 오십시쇠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인간이 50세에 이르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국가적 제도 중에서 양노연이라는 제도가 있어 50세 이상의 노인은 지역행정기관에서 경로잔치를 차려드렸고, 60세 이상은 국가기관에서,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은 대학에서 그들을 초빙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림으로써 노인에 대한 존경을 제도적으로 시범 또는 권장하였다. 예기를 보면 양기노이치효(養耆老而致孝)라는 말이 있다. 노인을 대접하는 일은 효와 경로를 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노연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신분과 지위를 묻지 않고 오로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신분에 의해서 위계질서가 유지되던 전통사회에서 양노연에 있어서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연령에 대한 가치의 절대적 우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다(박재간, 1995).

2. 물리적 측면에서의 노인 주거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의 주거 내 지위는 가부장적 권한과 전통 농경사회의 경제적 조건으로 인하여 가족 내 권한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권한을 중심으로 주거 내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위치 역시 매우 강하였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가족 가계계승 방법은 농남형(隱居型), 서부형(終身型), 제주형(獨立型), 함경도형(再歸型)으로 나눌 수 있다. 계승의 내용은 가족을 외부에 대표하는 대표권(代表權)과 가족을 지휘 감독하는 가독권(家督權), 가산을

관리하는 재산권(財產權),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제사권(祭祀權)이다. 서부형은 노부모가 은거를 하지 않고 가계계승을 한다. 부모가 자기들의 생전에 살림을 넘기지 않고 사후에 가장권, 주부권이 장남, 장자부에게 계승되는 특색이 있다. 부모가 노쇠하여 출입이 곤란하면 아들이 대표권(代表權), 가독권(家督權)을 대신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단지 대행일 따름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방의 점유 형태로도 드러나고 있다. 부모는 생전에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거처하던 사랑 큰방과 안방을 넘겨주지 않는다. 또한 종신형의 가계계승을 따르는 관행에 따라 부모생전에 방을 바꾸는 일도 없다. 3대를 이루었을 때, 중년의 며느리는 자기의 전년방을 새 며느리에게 내어 주는데, 이 때 노년의 시어머니는 거처하던 방을 중년 며느리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서 함께 지내기도 한다. 따라서 안방과 사랑 큰방이라는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 기력이 쇠해진 노인은, 실질적인 권한이 아들 내외에게 있다 할지라도, 집안 내 상징적인 권위자로 생의 마지막까지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홍형옥,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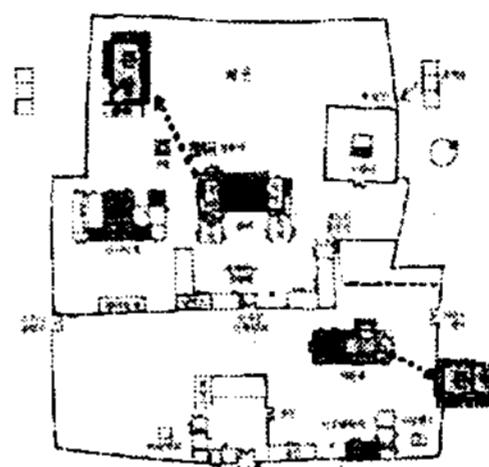


그림 1. 서부형 가옥의 종신형 노인 거처 (오공리 김씨집, 자료; 은난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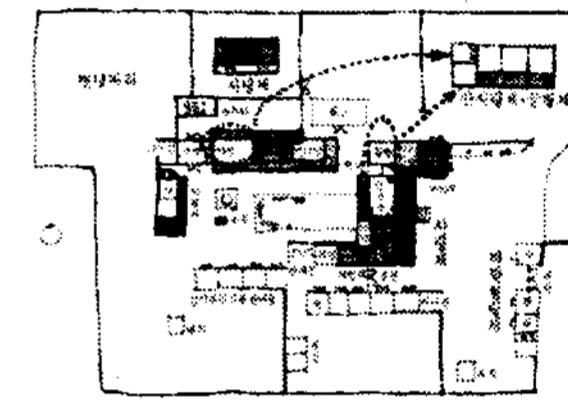


그림 2. 동남형 가구의 은거형 노인 거처 (정여창 고택, 자료; 은난순, 2006)

3. 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복지

조선세대에 들어와 노인복지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또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태조의 노인복지정책은 건국초 그의 교지에 나타나고 있는데 태조 4년 경로사상을 대명률로 선포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펴다. 이조시대 구호행정에 관한 제도는 『경국대전』에 집대성되었는데 그 안의 대전 중에는 의지할 데 없는 노인에 관한 사항과 각종 구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김성순, 1990).

경료호친사상은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 노인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노인복지 또한 상당히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도 국왕이 국민으로 하여금 경로호친을 미풍양속으로 유지·발전하도록 직접 모범을 보였으며, 태조 4년(1395)에는 경로사상의 대명률이 이두문으로 축조하여 번역하여 공포하였다. 구체적은 노인보호사업은 「경국대전」의 팔경에 집대성되어 있다. 태조3년(1394)에는 기노소를 설치하여 70세가 넘는 정2품이상의 문관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고 매년 봄과 가을에는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종4년(1403)에는 양민원을 설치하여 부양자가 없는 노인을 보호하였고, 세종 8년(1425)에는 오늘날의

양로원에 해당하는 제도를 만들어 양로법을 제정하였다. 조선시대에 시행된 노인보호사업은 이전의 시대보다는 제도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특권층에 속한 관리들의 노후에만 선별적으로 접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로효친의 효 사상을 사회가치관으로 정착시키고자 시설보호, 재가보호, 퇴직제도 등의 발전된 형태의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개국 개혁기에서부터 영조시대까지에 한해서만 실시되었다(박재간, 1995).

IV. 개화기 이후 주거에서의 노인주거 변화 : 19세기 말 ~ 1950년 대

1.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개화기 이후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사회의 유교사상에서 실학사상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나 전통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한 대가족제도로써 유교의 영향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이 발달하여왔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경험은 가족이나 사회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 연장자인 노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회로서 자연적으로 가족주의적 종적관계를 유지하여 노인은 확고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신순호, 최승영, 2001).

근대화 과정에서, 거시적 차원의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요인으로 인구증가, 도시화, 빈번한 주거이동, 가구의 절대적 수적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형태의 내부공간을 갖는 주거형태가 지배적으로 점유하게 된 과정에는, 거주자의 선택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주거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특징이 있다(전남일, 2002).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 이념은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신분개념이 직업개념으로 옮아가고, 상전과 하인에서 지주와 소작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존속되었다. 또한 6·25농란과 산업화로 인구이동이 심화되기까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는데, 특히 농촌과 같이 정체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다(홍형옥, 1992).

2. 물리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1915년 경성에서 열린 가정박람회에서 노인을 모실 양로실 역시 세평의 공간으로 꾸며졌는데 아담한 취미가 있고 차를 마시기에 적당한 공간이었다. 주부실과 양로실이 생긴 것은 주부와 노인에 대한 배려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개념이다. 아이를 위한 '소아방'과 노인을 위한 '노인실'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마련한 것이다. 노인실은 왕래에 편하도록 뒷간을 방의 곁에 지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인 소유의 방을 갖는 것이 모던한 종류 가정의 척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 방안에 모여 집단적인 생활을 했던 구 가옥제도와 비교하여, 가족들이 함께 영위하는 주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족 내부 간의 '독립'이 중요함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방의 분할은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분리를 의

도한다.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자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은 곧 행복할 수 있는 권리였다. 이제 자신의 이름이 붙은 방을 갖는 것이 모던한 가정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백지혜, 2005).

30-40년대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몇몇 평면도에서는 '노인실'이라고 하는 독립된 노인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건축가에 의한 작품 주택에서 뿐 아니라, 상류계층의 주택에서도 여전히 독립된 노인의 공간이 할애되고 있었으며, 전통사회의 이념도 상당히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은난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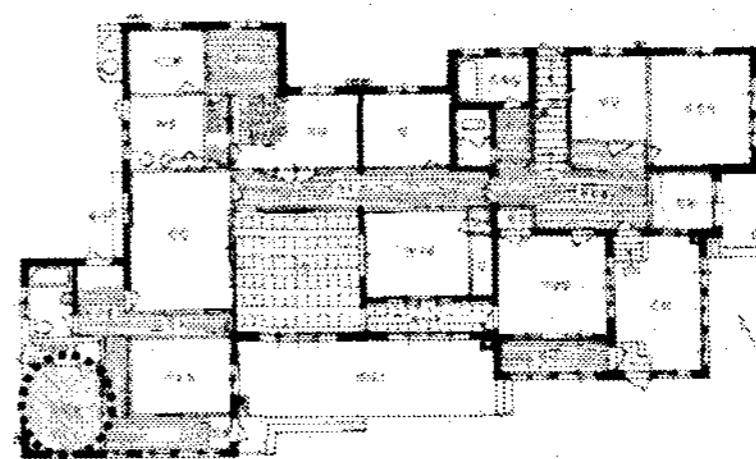


그림 3. 장기인 개량주택 평면도(1940년 시안)
(자료: 건축사 142호, 1981.1)

3. 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노인복지사업은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더불어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이때의 노인복지시책은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무마책이었고, 시혜 또는 자선적 성격의 단순구호사업에 불과하였다. 조선총독부 1916년에는 「은사진출자금빈민구조규정」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은사진출자금을 지급하였다. 1929년 조선귀족보호시설로서 재단법인인 창복회를 설립하여 당시 250만엔의 기금에 대해서 얻어진 이자로써 60세 이상의 노인귀족에게는 지급액의 30%를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노인구호사업은 일제 식민지 지배전략의 일부로서 소수의 노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그 규모와 내용은 보잘것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사회사업개요」에 1933년 당시 전국의 64개 양로시설에 58명이 수용·보호되었다. 그 후 조선구호령은 65세 이상의 극빈노인 또는 무의탁노인에게 필요한 생활부조, 의료부조 등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최순남, 2000).

그 후 8월 15일 광복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 대신 신탁통치 결정에 따라 미군정하에 들어갔다. 그런 속에서 1950년 이전은 주택정책을 논할 단계가 아니었다. 이 시기는 임시구호 주택 2만호의 건립에 그쳤으나, 6·25사변으로 60만호(약17%)가 파괴·소실되어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다만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회보장사업의 움직임은 활발하였으나 1950년 6·25사변으로 일시에 많은 전쟁고아들의 구호대상 인구가 급증하여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생각할 겨

률이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신정부는 1948년 일본인에 의해 건립된 조선주택 영단을 대한주택 영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1950년에는 보건부의 주택국을 폐지하고 주택문제를 사회국으로 이관하여 이때부터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취급되게 주택정책의 방향이 전환된다. 이 시기는 전화(戰火)로 인한 수용보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필요에 의해 1952년 10월 4일 사회부 장관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용요강」을 시달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정비강화를 모색하던 단계였다. 그래서 주택담당부서가 바뀐 후로도 1950년대는 뚜렷한 주택정책 없이는 사회부 주택국이 중심이 되어 사회 후생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2월 7일에는 보건위생부와 사회부가 통합되어 보건사회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행정이 원호국으로 이관되었다(신동보, 1972).

원호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1957년에는 처음 외국원조가 주택사업에 투자되어 주택건설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장기계획의 시작으로 청량리 우이동에 부흥주택과 국민주택이 건설되었으나 이는 피난민 수용을 위한 간이주택정책 성격을 담당기구가 보건사회부로 전환되는데, 이 보건사회부의 기구에는 부녀아동국이 독립되었으나 노인문제는 이곳에 포함시키지 않고, 복지과에서 행했다. 그러므로 책임있는 담당부서가 없어서 큰 진전이 없었다(신경주, 황원경, 1995).

V. 산업화 사회 이후의 노인주거 변화 – 60년대~80년대

1.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삶의 기반이 농경에서 산업으로 옮아가면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자식들의 분가와 도시로의 이주가 빈번해 지면서, 가족간의 질서와 위계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해방 후 신식 교육을 비롯한 근대문화가 본격적으로 밀려들어오게 되면서 '경제력'이 새로운 질서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국민교육의 보급은 지식면에서 부모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농업이외의 산업이 발달하고 분업화되었기 때문에, 농업밖에 모르는 부모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자식들을 가르칠 실력이 없어지고 말았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동성을 가진 젊은 사람의 신지식과 경험에 대해 노인은 시시비비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는 전통 농업사회에서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성공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인하여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1970년을 기점으로 도시 인구수가 농촌 인구수를 앞지르게 되었고, 전통적인 농업사회는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였다(박원석, 1995).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와 가구, 가족의 이동을 초래하여 도시의 인구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특히 대도시는 농촌인구 및 저소득 생활자들의 유입으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으며 따라서 심각한 주거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노인들에 대한 주거문제는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또 다른 요인의 되었다(조용순, 1997).

전통사회에서의 농경중심에서 산업사회로 경제체제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식세대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게 되면서 가족제도는 이전의 대가족제도과는 다른 핵가족제도로 변화되어 갔다. 특히 전통 사회에서의 가족관계 속에서 대접받던 노인의 위상은 서서히 평가절하 되면서 노인은 가족문제와 주거의 공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지위가 축소되었다.

2. 물리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대한 주택공사에서는 1989년에 서울 상계동과 창동지역에 3세대전용아파트 540세대를 제공한 것이 3세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계획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수준에서 수평, 수직 동거형과 수평 인거형의 3가지 유형이 개발되어 제공되었다. 이 주택의 특징은 3세대 놓거의 개념을 하나의 현관이 있는 주거공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관례적인 개념을 넘어 벽을 공유하며 각각의 현관을 가진 2개의 주거단위가 내부통로로 연결된 인거형까지 수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3세대전용공동주택의 개발보급을 위해 삼대가족형 공동주택의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주거단지는 노인이 생활의 거점을 옮기지 않고 독립생활 단계에서 완전의존 생활단계까지 연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것은 주로 별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3세대가족도 일부 수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신경주, 황원경,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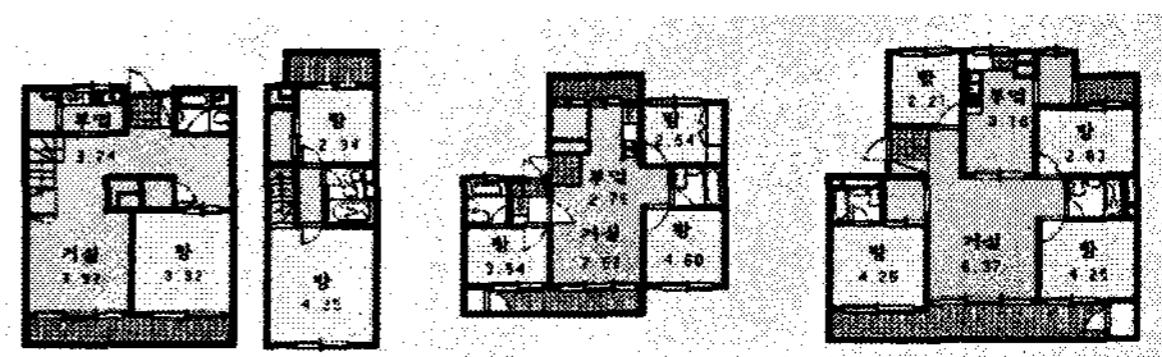


그림 4. 상계동 주공아파트 노인 3세대 동거형 아파트 평면도

3. 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1960년대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주택정책관련 내용 중 노인주택의 개발과 공급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 또한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주택건설 공급계획」에도 노인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것은 노인주택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자체를 가족부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던 시기로 국가 정책상 노인주택에 대한 복지정책이 없었던 시기이다.

1970년대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을 입주시

키는 정부지원 보호시설인 무료 양로시설이 있었을 뿐이다. 노인주택이 일반주택의 한 유형으로 개발되더라도 노인가구의 주거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반주택과는 달리 주택공급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주택거선 및 공급관련제도 모범인 주택건설촉진법에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 및 법적 정의가 없고 또한 노인가구 및 노인주택의 특성이 고려된 공급규칙이나 주택건설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주택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다면 노인복지법이다.

1980년대에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제정되었으며, 제 13조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 4178호로 개정되는데 제18조에 노인복지주택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유료노인시설이 신설되어 노인에 적합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노인주택건설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건교부와 주택공사에서 3세대 동거주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88년 상계지구 주공아파트에 3세대 동거주택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노인과 노화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택은 주택정책에 있어서 큰 관심을 이끌지 못했다(최순남. 2000).

IV. 현대 주거에서의 노인주거 변화 - 90년 이후

1.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근대화과정에서 전통적 가족문화 중 해체되거나 약화된 것은 다산주의의 가치, 대가족 및 확대가족 지향이었다. 근대사회는 가족이 더 이상 생산단위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족의 전통적 요소를 지속시킬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노동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소가족화 내지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심화되었다(통계청, 2000).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구조의 변화로 핵가족화 경향이 두드러져 노인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 고령자가구가 급속히 늘어나 고령자 부양을 가정외부에서 해결하려는 새로운 수요가 나타남과 동시에 노인과 자녀세대의 별거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녀세대와의 동거율은 낮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비율이 1990년 8.9%에서 2000년 16.2%로 10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고령자 1인가구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100명당 1990년 9명에서 2000년 16명으로 나타나 혼자 사는 노인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통계조사결과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에서 2002년도 45.8%에서 2005년 52.5%로 자녀와 동거하고자 하는 노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노인가구의 세대구성

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 29.9%가 3세대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이 1세대가구(28.7%), 2세 대가구(23.9%)순이며 노인 혼자 사는 1인가구도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에 비하여 1세대 가구는 크게 증가(11.8%p)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18.8%)하였다(통계청, 2005년 사회통계조사).

2. 물리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현대사회로 오면서 핵가족의 증가 뿐 아니라 노인단독 가구는 7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의 노인과 자식간의 거주지 분리는 세대간의 문화와 삶의 방식 공유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노인의 주거 분리는 평면의 특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건축가들에 의해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한 공간 내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수직인거형의 형태로 충별 분리를 통하여 노인과 자녀세대의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 공간 안에 거주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공간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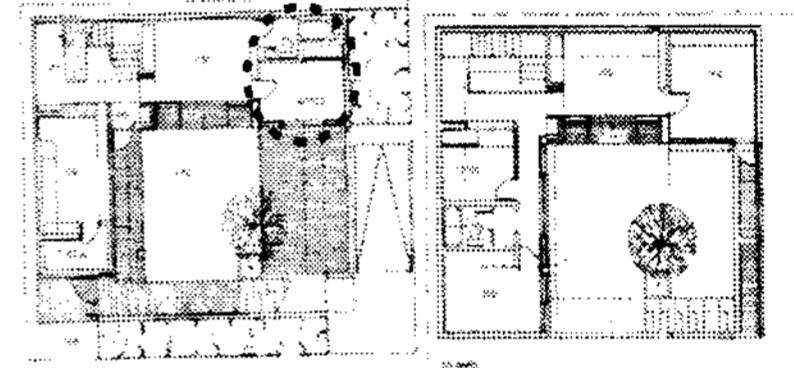


그림 5. 그 자집 (1997년, 조병수설계)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각종 사회복지재단도 노인용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훈복지타운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을 시공 중이다. 이러한 노인주택의 경우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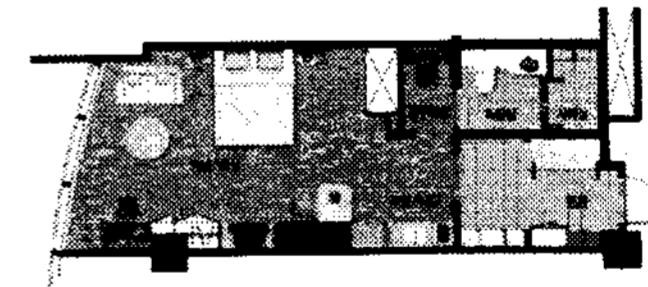


그림 6. 삼성노블카운티

3. 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199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1993년 12월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유료시설에 개인 및 이의단체의 참여를 허용하였고,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강화와 시설의 다양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지원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무료로

2) 통계청 각년도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과 2002년의 통계 결과 자녀 동거여부와 장래거주 희망지, 노부모 부양 견해 결과 노부모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되고 이에 다른 정부와 시설과 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유료화 하여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복잡한 정하와 까다로운 제약을 받고 있어 유료노인시설의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신순호, 최승영, 2001).

또한 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가족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인 노인 4~5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노인의 집' 프로그램이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2000년에 신설된 주거급여는 소액에 그쳐서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다(손경숙, 정미녀, 2004).

VI. 결론 및 제언

노인주거의 연구에서 여러 방법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적 관점에서 노인주거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주거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복지적 연구의 접근은 노인의 복지 대상으로서 보고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으로써 주택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초점을 둔 유용한 이론적 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주거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주거의 변화의 사회적·물리적·정책적 측면에서 복지적 관점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자세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점에서 전통사회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노인공경의 사회적 이념이 개화기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가족제도의 붕괴와 경제발달로 인하여 노인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서 노인의 사회적 위치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소외와 갈등을 불러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소외된 계층으로서 노인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적 지원이 1980년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물리적 관점에서 노인의 주거는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권력 강화로 노인의 위치와 권력에 의하여 주택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노인의 경우 주택 내에서 사회적 노인의 권리 감소와 위치 변화로 인하여 주택 내 노인의 역할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공간의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던 위치에서 공간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고 공간 내 주거 분리와 거주지 분리 등 노인의 가족과 공간분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정책적 관점에서 노인주거는 전통사회의 유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노인의 위한 여러 제도를 통하여 노인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기와 일제시대를 견너으면서 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의 주택정책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노인복지법의 등장으로 인하여 노인주택에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의 복지적 측면에서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인주거의 경우 전통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개념과 노인의 특성 속에서 노인을 바라보고 단순한 지원과 계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인 복지적 접근 방법에서 단순한 의미의 노인주거가 아닌 거시적 측면에서 노인주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주거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지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홍형옥(1992). 한국 住居史. 서울;민음사.
박원석(1995). 국토와 토지정책. 서울;범론사.
김성순(1990).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홍의제.
최순남(2000). 현대노인복지론. 서울;한신대학교 출판부
신동보(1972). 주택정책의 좌표.
백지혜(2005). 스위트 홈의 기원. 서울;(주)살림출판사
김동욱(1997). 한국건축의 역사. 서울;기문당,
건축사(1981.1). 142호
지은영,홍형옥(2002). 노인주거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7-147.
유병선,홍형옥(2005).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27-38.
채혜원,홍형옥(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33-44.
박재간(1995). 전통사회의 효사상과 노인보호정책. 사회복지논총 1, 55-72.
손경숙,정미녀(2004).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논문집 37, 45-65.
은난순외 3인(2006). 근대 이후 노인의 생활과 생활공간 변화에 대한 일상사적 고찰.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전남일(2002). 한국 주거내부공간의 근대화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61-73.
신경주,황원경(1995). 한국·미국·일본의 노인주택정책. 한국생활과학연구 13, 97-113.
신순호,최승영(2001). 노인주택정책의 실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18. 33-53.
Joris Hoekstra(2003). Housing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therland. Theory and Society, 20(2). 58-7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2005.